

입법예고

축 산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농 립 축 산 식 품 부
(축산정책과)

1. 개정이유

종계·종오리 검정제도 개편에 따라 종계업, 종오리업 허가기준을 정비하고, 돼지 정액등처리업 중 ‘두록’의 평가 항목을 추가하는 등 운영 현실에 맞게 가축 개량 제도를 개선하여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농가의 시설 운영 여건과 케이지 시설 기준의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종계업 및 산란계 사육업의 케이지 시설 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토종가축 인정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법」이 개정(법률 제21509호, 2026. 3. 31. 공포, 2027. 4. 1.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과태료 액수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계·종오리에 대한 일반검정 삭제에 따라 종계업 또는 종오리업 허가 시 갖춰야 할 서류 기준 개선(안 별표1)

나. 돼지 정액등처리업 중 ‘두록’ 능력 형질에 생존새끼수 기준 마련 및 생존새끼수 산정에 필요한 분만 회차별 보정계수 개선(안 별표1)

1) ‘재래돼지’를 ‘토종돼지’로 표현 변경

다. 종계업, 산란계 사육업에 대한 케이지 시설 기준 삭제(안 별표1)

* 케이지 12단 이하 설치, 케이지 사이 폭 1.2미터 이상 확보, 케이지의 3단에서 5단 사이마다 고정식 복도 설치

라. 축산법 개정('26.3.31. 공포)에 따라 과태료 기준 마련 등(안 별표4)

1) 법 제9조의2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토종가축 인정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 2)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이상으로 가축을 사육한 경우
 - 3)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출입·점검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4)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5)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회차 적용 기준 마련
- * 가중 처분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기간 내에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의 다음 차수로 규정

3. 주요 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 없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1)나) 종축란의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종계 또는 종오리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중 어느 하나

의 서류를 보유할 것

(가) 종계·종오리 육종회사 또는 원(原)종계장 또는 원종

오리장에서 발행한 계통보증서

(나) 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등록기관이 발행한 혈통증명서

(다) 법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닭·오리 검정기관에서 발

행한 종계·종오리 검정확인서

별표 1 제2호가목1)나)의 사육시설란 (라)를 삭제하고, 같은 란 (마)를 (라)로 하며, 같은 목 4)다) (1)의 사육시설란 (1) 후단 중 “경우 케이지 시설을 이용하여 산란계 사육업을 하거나 2단”을 “ 경우 2단”으로 하고, 같은 란 (가), (나)를 삭제하고, 종전 (나)의 i)부터 v)까지를 (가) 목부터 (마)목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3)(2)(나) 두록의 생존 새끼 수(마리)를 “9 이상”으로 하고, 품종란의 “재래돼지”를 “토종돼지”로 하고, 비고 4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만 회차	보정계수		
	랜드레이스	요크셔	두록

1	<u>1.05</u>	<u>1.04</u>	<u>1.07</u>
2	<u>1.03</u>	<u>1.02</u>	<u>1.04</u>
3	<u>1.00</u>	<u>1.00</u>	<u>1.00</u>
4	<u>1.01</u>	<u>1.00</u>	<u>1.01</u>
5	<u>1.02</u>	<u>1.04</u>	<u>1.04</u>
6	<u>1.04</u>	<u>1.05</u>	<u>1.08</u>
7	<u>1.09</u>	<u>1.07</u>	<u>1.08</u>
8	<u>1.10</u>	<u>1.07</u>	<u>1.08</u>
* 보정방법: 랜드레이스 어미 돼지 1회차 새끼 수가 8이면 <u>1산차 보정계수 1.05를 적용하여 보정 새끼 수는 8.4(8 × 1.05 = 8.4)</u>			

별표 4 제1호가목 전단 중 “제2호너목부터 커목”을 “제2호머목부터 고목”으로 하고,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4 제1호 기존 나목, 다목을 각각 다목, 라목으로 하고, 라목(기존 다목) 단서 중 “제56조제1항”을 “제5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과태료		
		1회	2회	3회 이상
가. 제9조의2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토종가축 인정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1호	150	300	500
나. 법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2호	100	250	500

2)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100	300
<u>다.</u> 법 제2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1호	200	400	800
<u>라.</u>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가축사육업을 경영한 경 우	<u>법 제56조제2항제3호</u>	100	200	400
<u>마.</u>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 육업을 등록한 경우	<u>법 제56조제2항제4호</u>	100	200	400
<u>바.</u>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2호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150	300	600
2)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		100	200	300
<u>사.</u> <u>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u> 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3호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200	400	800
2)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100	200	400
<u>아.</u>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4호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50	500	1,000
2)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	250	500
<u>자.</u>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5호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200	400	800
2)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100	200	400

한 자				
차.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6호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250	500	1,000
2)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		100	200	400
카.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이상으로 가축을 사육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6호의2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250	500	1,000
2)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		100	200	400
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경우 또는 출입·정기점검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7호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200	400	800
2)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등록(법 제3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자		100	200	400
파. 제28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경우 또는 출입·점검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5호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100	200	400
2)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등록(법 제3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자		50	100	200

하.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u>법 제56조제2항제6호</u>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100	200	400
2) 법 제22조제3항 및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		50	100	200
거.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u>법 제56조제2항제7호</u>	100	200	400
너.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u>법 제56조제2항제8호</u>	100	200	300
더. 법 제34조의4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경우	<u>법 제56조제2항제9호</u>	100	250	500
러. 제34조의5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u>법 제56조제2항제10호</u>	100	200	400
며. 법 제42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해당 인증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한 경우	<u>법 제56조제2항제11호</u>	100	200	300
버. 법 제4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품의 생산·취급 또는 판매 실적을 정기적으로 인증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u>법 제56조제2항제12호</u>	30	50	100
서. 법 제4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심사와 관련된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u>법 제56조제2항제13호</u>	30	50	100
어. 법 제42조의6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u>법 제56조제2항제14호</u>	30	50	100
저. 인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로서 법 제42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u>법 제56조제2항제15호</u>	150	300	500

인증표시를 한 경우				
<u>거. 법 제42조의8제5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중요 사항을 승인받지 않고 변경한 경우</u> 1) 법 제42조의8제5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42조의8제5항 단서를 위반하여 중요 사항을 승인받지 않고 변경한 경우	<u>법 제56조제2항제16호</u>			
1) 법 제42조의8제5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30	50	100
2) 법 제42조의8제5항 단서를 위반하여 중요 사항을 승인받지 않고 변경한 경우		100	200	300
<u>터.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2조의10 제1항 또는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u> <u>퍼. 법 제42조의11을 위반하여 인증기관이나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u>	<u>법 제56조제2항제17호</u>	150	300	500
1) 법 제42조의11을 위반하여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u>법 제56조제2항제18호</u>	150	300	500
2) 법 제42조의11을 위반하여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u>허. 법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u>	<u>법 제56조제2항제19호</u>			

1) 법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2) 법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50	300	500
고. 법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고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20호	150	300	500
노.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자료제출을 한 경우 또는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21호			
1) 제6조제1항에 따라 가축의 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100	200	400
2)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의 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100	200	400
3)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100	200	400

부 칙

이 영은 202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2317, 2330